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임관 전에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임관 후에 심신장애 등으로 전역되거나 파면 등으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도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고,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반납이 곤란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장려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4. ~ 5. 14., 11. 1. ~ 12. 8.) 결과,

특기할 사항 없음

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60조의3제3항”을 “「군인사법」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군 장려금의 반납)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,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(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.

1. 임관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가. 퇴학 또는 학적에서 제적된 경우

나.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

다.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라.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
2. 임관 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가.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

나.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

② 각군 참모총장이 제1항에 따라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반납 통지를 할 때에 반납액의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의 반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반납을 연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사망한 경우

2. 전상(戰傷)이나 공상(公傷)을 입은 경우

3.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「군인사법」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

4.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장교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

다고 판단된 경우

⑤ 군 장려금의 반납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연기·면제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고,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) ①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(이하 “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

2.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

제5조의3(재심사 청구) ① 제5조제6항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반납 연기·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령금 반납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군 장령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군 장령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령금반납심사위원회(이하 “중앙군장령금반납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④ 중앙군장령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국방부, 합동참모본부,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·일반군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

2.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중앙군장령금반납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⑥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군장령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 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3항 단서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5조의3제1항·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[별표]

반납액 산정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구 분	반납액
1. 임관 전에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	지급된 군 장려금 전액
2. 임관 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	$\text{지급된 군 장려금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기간의 개월수} - \text{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개월수}}{\text{의무복무기간의 개월수}}$

비고: 제2호의 “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개월수”를 계산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.

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

성명 :

위 사람은 년 월에 군 장려금을 지급받고 임관 전(후)에
사유로 년 월 일자로
「군 장려금 지급 규칙」 제5조제1항의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
다음과 같이 반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반납금액	반납기간	납입처
원	까지	

년 월 일

()군 참모총장 (서명 또는 인)

보증인(보험회사)

주소

성명

[안내사항]

군 장려금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「군 장려금 지급 규칙」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서를 반납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군 장려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서

접수일	처리기간		90일
신청인	성명		
	주소		
신청내용	학교 및 전공학과		
	지급받은 비용 명세	연기기간	
	연기(면제) 사유 (일부 또는 전부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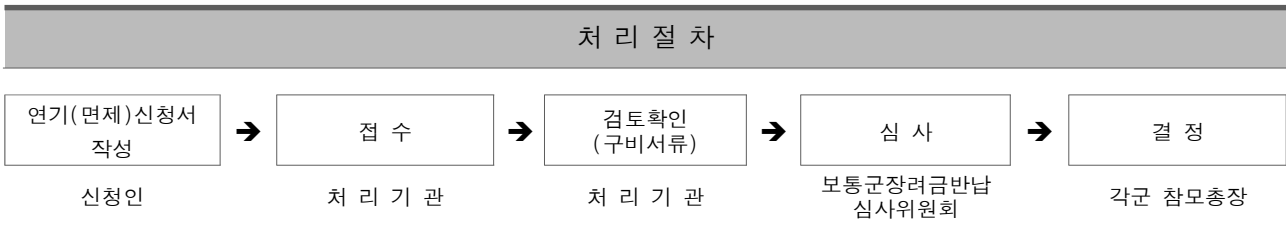
「군 장려금 지급 규칙」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의 []연기 또는 []면제(전부 또는 일부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연기(면제) 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)군 참모총장 귀하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군인사법 시행령</u> 」 제60조의30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군인사법</u> 」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3항-----		
제2조(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) ① 육군·해군·공군(해병대를 포함하며, 이하 “각군”이라 한다) 참모총장(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, 이하 “각군 참모총장”이라 한다)은 「 <u>군인사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2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(이하 “군 장려금”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<u>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0 제1항</u> 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.		제2조(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) ① -----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5조(군 장려금의 반납)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.		제5조(군 장려금의 반납)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		

1.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
2.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
3.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4.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
하도록 해야 하고,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(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.

1. 임관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가. 퇴학 또는 학적에서 제적된 경우

나.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

다.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라.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
2. 임관 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가.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

나.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

된 경우

② 각군 참모총장이 제1항에 따라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반납 통지를 할 때에 반납액의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의 반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반납을 연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사망한 경우

2. 전상(戰傷)이나 공상(公傷)을 입은 경우

3.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「군인사법」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

4.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장교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

⑤ 군 장려금의 반납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연기·면제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고,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

<신 설>

<신 설>

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의2(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) ①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(이하 “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
2.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

제5조의3(재심사 청구) ① 제5조

제6항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
반납 연기·면제에 관한 결정에
의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
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
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
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
른 청구를 받으면 제3항에 따른
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
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군
장려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
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
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
사위원회(이하 “중앙군장려금
반납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
다.

④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
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
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
또는 위촉한다.

1. 국방부, 합동참모본부, 각군
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4
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·일
반군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의

	<u>장교</u> <u>2.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</u> <u>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</u> <u>사람</u> ⑤ <u>중앙군장령금반납심사위원</u> <u>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</u> <u>속한다.</u> ⑥ <u>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</u> <u>사항 외에 중앙군장령금반납심</u> <u>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</u> <u>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</u> <u>다.</u>
--	---